

보 도 자 료

보도날짜

2020. 4. 3. (금)

7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 그 이후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구 분	보도요청
수 신	각 언론사 여성 아동 담당
발 신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 사단법인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탁틴내일
담 당 자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 십대여성인권센터 www.teen-up.com / 02) 6348-1318 / [REDACTED] 서울시 영등포구 [REDACTED] 대표 조진경, 사무국장 권주리 홍보TFT: 다시함께상담센터, 탁틴내일, 여성인권센터 살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19년 1월 22일 (화) 출범하였습니다.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상업화된 성착취 범죄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현행 ‘아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에 뜻을 같이하는 한국사회 시민·사회·여성·아동·청소년·인권 단체들 (373개/2020. 4. 03. 현재)의 연대체입니다.

□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2년째 계류중인 ‘아청법’ 개정의 통과를 요구하며 2020년 4월 1일 (수) 국회 국민동의청원서 등록을 시작으로 청원에 돌입했습니다.

□ 법무부는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아청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개정에 앞장서고, 20대 국회는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아청법’ 개정을 통해 성착취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온전한 피해자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성명서

성명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 그 이후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실상이 드러나며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서명을 통해 조주빈과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고, 대통령이 ‘n번방’ 가입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엄벌을 주문했다. 여러 정당과 관련 부처도 각각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국민의 공분에 직면하여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이제야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 정치권의 변화를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우리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심히 우려를 표한다.

현재까지 경찰이 발표한 조주빈의 대화방 속 피해자는 아동·청소년만 26명 등 현재 100명을 넘

어서고 있다. 그러나 그의 밝혀지지 않은 대화방이나, ‘갯갯’을 비롯한 동일 범죄 행위자들에 의한 성착취 피해자까지 합친다면 피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를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는 거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이 피해를 알린다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것을 시작했느냐”, “왜 진작에 그만두지 못했냐”며 마치 피해자가 범죄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비난받을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아청법’은 이러한 2차 가해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 가해와 동일한 시선으로 성착취의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과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나누고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은 성범죄자나 알선자들로부터 “신고해봐, 너도 처벌 받아”라는 협박을 받으며 더 심각한 성착취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결코 자유롭게 신고할 수 없었다. 신고가 없으면 성범죄자도 드러나지 않는다. n번방이 그렇게 오랫동안 감춰지고 끔찍한 폭력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청법’의 피해자를 자발과 강제로 구별하는 규정 때문이다.

성착취 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책임을 묻는 현행 ‘아청법’은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반하며, 아동인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곧 성착취이며 성매수 범죄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법률도 성착취에 유입된 동기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모든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019년 9월에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정부 이행사항 검토 심의에서도 위원들은 현행 ‘아청법’의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이 대한민국이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고, 최종견해를 통해 “성매매 및 성적학대에 연관한 모든 아동을 “피해자”로 명시하여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 관련된 지원서비스 및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2017년 8월과 201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차례나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대상아동·청소년’ 개념 삭제, ‘피해아동·청소년’ 개념으로 통합, 보호처분 대신 피해자로서 전문적 치료와 교육을 제공, 성인과 다른 성장과정 중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부 신상공개의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2018년 2월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이 넘는 현재까지 이 개정안은 법무부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어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n번방 사건을 통해 성착취 수법이 전면에 들어난 오늘에서도 법무부의 입장은 여전히 요지부동

이다. 도대체 법무부는 수많은 n번방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성착취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성착취 범죄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법률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는데도 피해자들은 신고하지 않았을까? 2018년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청법’이 통과되었을 때 현행 ‘아청법’이 개정되었다면 n번방 사건 피해자들 중 최소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n번방과 같은 성착취 범죄는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아청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성평등과 성착취 없는 사회를 원하는 전국민의 염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폭력이 지속되고 성범죄자들이 안전한 사회는 더 이상 지속되면 안된다. 이에 우리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한다. 우리 ‘공대위’는 2년 넘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아청법’을 국민의 힘으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법무부는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아청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개정에 앞장서라. 20대 국회는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아청법’ 개정을 통해 성착취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온전한 피해자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마지막 소명을 다하라. (끝)

2020년 4월 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총 373개(2020년 4월 현재)**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씨튼해바라기의집, 우리들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 샘,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마인하우스, 여울여성희망센터, 한국여성의집, 휴먼케어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여성성공센터 W-ing,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Na-Mu,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사)광주여성의전화 부설‘한울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상담소 어깨동무, 새움터, (사) 인권희망‘강강술래’, (사)여성인권 티움, (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 제주여성인권연대, (사)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보다 상담소)

사)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사)경원사회복지회, (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사)햇살사회복지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밥풀러서 협동조합, 성매매피해 상담소 "With Us",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사) 나누리회부설 해아림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나자렛성가정공동체, 마인하우스, 여울여성희망센터, 한국여성의집, 휴먼케어센터, 우리들쉼자리, 유프라시아의집, 씨튼해바라기의집, 평화의샘, 희망터, 나루, 안뜨레봄, 구세군정다운집, 우리청소년쉼자리, 여신, 수지의집, 소망의집, 누리봄, 씨밀레, 동글레청소년지원시설, 구세군샬리흙, 신나는디딤터, 살림쉼터, 부산여성의집, 해뜨는집, 해아림, 로댐의집, 경남범숙의집, 해바라기쉼자리)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사)인권희망 강강술래 부설 희희낙락 상담소, (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상담소,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상담소,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자활지원센터, (사)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사)여성인권지원티움 부설 느티나무 상담소, (사)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현장상담센터협의회(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여성인권지원센터 쉬고,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북성매매피해상담소 새날, 강원여성인권지원센터 공동체 춘천길잡이의 집,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부산여성단체연합((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회, (사)부산한부모지원센터,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설 상담소, (사)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 꿈아리,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설 쉼터, (사)북구세군샬리흙, (사)북부산여성의집, (사)북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사)북해뜨는 집,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설 자활지원센터 숲), (사)가족상담센터 희망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 (사)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사)부산여성회 부설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북중부산 가정폭력상담소, (사)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사)북새길공동체 누리터, (사)북새길공동체 해봄터, (재)평화여성의집,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사랑의집, (사)북새길공동체 양지터, (사)북로사리오카리타스 초원의 집)

(사)들꽃청소년세상(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자립팜 "이상한나라앨리스", 한신쉼터, 새발토끼 풀가정, 야긴새벽이슬가정, 인애해바라기가정, 아모텍오디가정, 아모그린텍장미가정, , 아모텍진달래가정, 아모센스참나리가정, 아모엘리디코스모스가정, 한신예수가정, 들꽃피는학교, 아담스지역아동센터, 관악교육복지센터, 들꽃청소년연구소, 전북청소년자치연구소"달그락달그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벨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
 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
 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
 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
 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
 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
 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
 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
 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템나
 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
 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
 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당진 가족성통합 상담센터,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
 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
 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광주여
 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
 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템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
 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담
 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
 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
 상담소, 통영YWCA성폭력 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
 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
 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
 폭력 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인여성공감 부설
 장애인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
 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
 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
 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
 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
 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
 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안양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시소·강릉청소년성문화센터, 원주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남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여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1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2청소년성문화센터,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서울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춘천길잡이의 집, 장애인권법센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사)두루,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대구여성회, 세이브더칠드런, 정치하는 엄마들, 경기탁틴내일, 경계너머교육센터, (사)평화의샘, 푸른아우성, 군포탁틴내일, 함께걷는아이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법무부

(경유)

제 목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성명서 발송의 건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19년 1월 22일 (화) 출범하였습니다.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상업화된 성착취 범죄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현행 ‘아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에 뜻을 같이하는 한국사회 시민·사회·여성·아동·청소년·인권 단체들(372개/2020.4.3. 현재)의 연대체입니다.

3.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2년째 계류중인 ‘아청법’ 개정의 통화를 요구하며 2020년 4월 1일 (수) 국회 국민동의 청원서 등록을 시작으로 청원에 돌입하며, ‘아청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붙임 :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성명서 1부. 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 신 일 2020. 4. 3. 담당: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전화: (02)6348-1318 이메일: teen-up.com@daum.net 홈페이지 주소: <http://www.teen-up.com>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여성가족부

(경유)

제 목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성명서 발송의 건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19년 1월 22일 (화) 출범하였습니다.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상업화된 성착취 범죄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현행 ‘아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에 뜻을 같이하는 한국사회 시민·사회·여성·아동·청소년·인권 단체들(372개/2020.4.3. 현재)의 연대체입니다.

3.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2년째 계류중인 ‘아청법’ 개정의 통화를 요구하며 2020년 4월 1일 (수) 국회 국민동의 청원서 등록을 시작으로 청원에 돌입하며, ‘아청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붙임 :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성명서 1부. 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 신 일 2020. 4. 3. 담당: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전화: (02)6348-1318 이메일: teen-up.com@daum.net 홈페이지 주소: <http://www.teen-up.com>